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29호 2011. 4. 25.(월)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6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10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4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11호(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정미한 사항 변경)) 6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332호(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13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33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5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33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36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규칙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당직수당 규정을 신설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주5일 근무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수당 규정 신설 <table><tr><th rowspan="2">당직구분</th><th colspan="2">당직수당</th></tr><tr><th>현 행</th><th>변 경</th></tr><tr><td>평일숙직</td><td>35,000원</td><td>50,000원</td></tr><tr><td>일직 및 익일 휴무 숙직</td><td>50,000원</td><td>70,000원</td></tr></table>	당직구분	당직수당		현 행	변 경	평일숙직	35,000원	50,000원	일직 및 익일 휴무 숙직	50,000원	70,000원
당직구분	당직수당											
	현 행	변 경										
평일숙직	35,000원	50,000원										
일직 및 익일 휴무 숙직	50,000원	70,000원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2011. 4. 25.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64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을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 1회당 5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일직 및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7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직의 구분) ①생략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현행과 같음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u><신설></u>	제4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 1회당 5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일직 및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70,000원으로 한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주차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소3-2호선,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되었기에 「같은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교통행정과(☎810-7492) 및 도시계획과(☎810-7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4. 2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7-2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소3-2호선, 주차장)
 - 명 칭 : 옥련동 567-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공 사 명	면 적 (㎡)			기 점	비고
	주차장	도로	계		
옥련동 567-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81	371	2,352	옥련동 567-28번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1. 1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지구내(㎡)	소유자	비고
1	옥련동	567-31	임	423	222.0	박봉자	변경없음
2	옥련동	567-30	임	423	355.0	박봉자	"
3	옥련동	567-29	임	420	420.0	박봉자	"
4	옥련동	567-28	임	423	406.0	박봉자	"
5	동춘동	산14-15	임	1,190	351.0	김기월	당초
		산14-174	임	351	351.0		변경
6	동춘동	806-17	임	1,485	327.0	대한불교 관음종홍륜사	당초
		806-81	임	309	309.0		변경
		806-82	임	18	18.0		변경
7	동춘동	806-78	도	271	271.0	대한불교 관음종홍륜사	변경없음
계					3,03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41호(2009.11.09)로 지정한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변경)하고 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연수구청 건축과(☎032-810-77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8,481.0	증) 67.0	8,548.0	

○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m ²)	비 고
변경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8,548.0	◦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481.0	증) 67.0	8,54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481.0	증) 67.0	8,548.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8,548.0	◦ 지적현황 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종점				
기정	중로	2	144	15~18	국지 도로	282 (43)	광로3-6	대로3-40	일반 도로	-	1991.7.15	-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34 (9)	대로2-14	중로2-144	일반 도로	-	1991.7.15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4번지 일원	90.0	-	90.0	2009.11.09	무상 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286-3번지 일원	360.0	-	360.0	2009.11.09	무상 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²)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변경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기정	8,481.0	40	-	-	40	-	
		변경	8,548.0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 적(㎡)							
변경	옥련대진 빌라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548.0	1-1 (공동주택)	기정	7,9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30% 이하	78m이하		
				변경	7,967.0						
			1-2 (주차장)		90.0		주차장	-	-	-	
			1-1 (공동주택)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 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2 (주차장)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전용면적40㎡이하 전체의 5%이상) ·200세대미만 계획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예외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건축 한계선	1-1	중로2-144, 소로2-11호선변	폭 3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 대지경계선변	폭 3m지정					
				1-2	소로2-11호선변	폭 3m지정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 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 부지제공(20.36%)+지하주차장 확보(10.0%)+탑상형아파트 건립(5.0%)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비고
환경보전 계획	☐ 토양포장 - 보도와 차도에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토양 포장물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 우수유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포장면적이 공원,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 편입대상지역은 개발지(도로, 상가시설물지역 주거지, 철도 등)에 의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부지 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 먼지 - 공사 건물과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설시 및 차량 진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20km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폐기물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물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함 - 공사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소음 - 공사 시 소음저감 대책은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 대다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 도로변은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재난방지 계획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수해대책 -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처리방안 계획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은 남측 옥련중학교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200m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및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청소년 유해시설의 입지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학습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음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구분	획지 번호	위치	면적(m²)	
1-1	1	8,548.0	기정	1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7,9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1	"	7,967.0	"
1-2			기정	2	연수구 옥련동 286-4번지 일원	90.0	주 차 장
1-3			기정	3	연수구 옥련동 286-3번지 일원	360.0	소 공 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상습침수구역 현황	본 대상지의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상습침수구역 현황을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수해 상습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하천 및 소하천 존재 여부	사업대상지 내에 하천 및 소하천은 없음	
산사태 및 사면붕괴 피해 현황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기록되지 않음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심지역으로 경사가 미비한 평지로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은 없음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1-1, 1-2	대지 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에는 가로 녹화, 가로 및 지구의 경관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식재 및 시설을 정할 수 있음 ·대지안의 조경은 도로변으로 이격거리를 통한 방음수림대를 조성하여 소음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함	
		전면 공지	·남측 소로2-11호선변 폭 2m를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인도로 식별될 수 있는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권장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 금지	

② 교통처리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1-1, 1-2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지정 ·차량출입구는 최소한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③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 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④ 학교 신·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교육 재정계획 및 학교설립계획에 부합하도록 계획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연수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4.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다 음

1. 등록일자 : 2011. 04. 20
2. 폐기일자 : 2011. 04. 21
3. 공인 등록 사유 : 신조
4. 공인 폐기 사유 : 기구(위원회) 폐지, 인증기 고장 및 교체
5. 등록 및 폐기대상 공인 인영 : 붙임 참조 끝.

신조 및 폐기 공인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신조	송도동장인민원사무전용	2.1cm × 2.1cm		인증기용 사용예정일 2011.04.21
	동춘3동장인민원사무전용	2.1cm × 2.1cm		인증기용 사용예정일 2011.05.02
폐기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 위원회인	3.5cm × 3.5cm		폐기일 2011.04.21
	인천광역시연수구관용심사 위원회인	3.5cm × 3.5cm		
	인천광역시연수구관용심사 위원회위원장인	2.0cm × 2.0cm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 민원행정팀민원전용 (인증기용)	2.4cm × 2.4cm		
	동춘3동장인민원사무전용 (인증기용)	2.1cm × 2.1cm		
	송도동장인민원사무전용 (인증기용)	2.1cm × 2.1cm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 - 33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법률 제10219호, 2010.3.3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세 관계 분법 제·개정 법령 인용조문 정리
 -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 조문정리(안 제1조 등)
- 지방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개정(안 제17조, 제18조 등)
 - 세무조사 사전통지(7일 전에 → 10일 전에)
 - 세무조사 기간(규정없음 → 20일이내)

○ 별지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032-810-7202, www.yeonsu.go.kr/ (참조 : 세무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의” 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6조의”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4조의” 를 “법 제136조의”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7일 전” 을 “10일 전” 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7일 이내에” 를 “조사개시 전까지” 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기간을 정하여” 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을 “(조사기간의 연장)” 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조력을 받을 권리)” 를 “(조사권행사의 제한과 납세의무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을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으로 하고, “입회하거나” 를 “참석하거나” 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법인명부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99호 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 제26조의”를 “법 제73조제1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중 “법 제64조에”를 “법 제136조에”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등	소속		직급		성명	
서 명 날 인 거 부 부 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예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건 설 업 ()	
	판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2년이면 사업연도별(2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인천광역시연수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세무과

우편번호 : 4 0 6 - 7 2 3

※ 문의전화 : (032) 810-7200 ~ 7205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시설물·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무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 제출

☐ 도급공무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목차

1.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서식 1.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납부액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자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명세서

사업 연도		사업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번지 호	사 업 장 명	
----------	--	-----	------------------	------------	--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 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 인 세 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사업 개일	연면적 (a)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 면적 c(a- b)	② 정당 세액 (d)	기납부 세 액 (e)	납부 일자	차인 세액 f(d- e)
				기 숙 사	구내 식당	기타	소 계 (b)					

(297mm×210mm, 가로서식)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종업원수 산정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및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수시 고용하는 인원을 합함
 - ※ 수시고용 인원수 산정방법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수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㉑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㉒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㉓=(㉑-㉒)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㉓×(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mm×210mm, 가로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illegible]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 7. (생략)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①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6조의 ----- ----- ----- ----- ----- -----. 제2조(정의) ----- -----. 1. ----- 법 제136조의 ----- ----- ----- ----- ----- -----. 2.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① ----- -----10일 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조사개시 전까지 -----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u>조사기간을 정하여</u>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 ----- ----- <u>20일 이내</u> <u>의 기간을 정하여</u> ----- -----.
제19조(<u>조사기간 연장의 제한</u>) (생 략)	제19조(<u>조사기간 연장</u>) (현행과 같음)
제23조(<u>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u>) ① (생 략) ② <u>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u>입회 하거나</u>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u>	제23조(<u>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의무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u>)①(현행과 같음) ② <u>납세의무자는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참석 하거나</u> -----.
<신 설>	제24조의2(<u>법인명부 관리</u>) ① <u>구청장은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한 법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u>
제27조(조사의 착수 등)① (생 략)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지방세기</u> <u>본법 시행규칙</u> 」 별지 제99호서식----- -----.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 그 조사결과를 빠른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와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법 제26조의</u>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3. (생략) <u><신설></u> 제32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u>법 제64조에</u> 의거 구청장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0조(세무조사결과통지) ----- ----- ----- ----- ----- ----- -----. 1. <u>법 제73조제1항의</u> ----- ----- 2. ~ 3. (현행과 같음) 4. <u>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u> 제32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① ----- ----- <u>법 제136조에</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검 토 의 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04월 2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고령화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및 중요한 고령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과 구청장의 자문 기능을 규정 함(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12
일(목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749-6911, www.yeonsu.go.kr/
(참조 : 가정복지과장))]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사항
5.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에 관한 사항
6.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 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
8.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위치 축소에 관한 사항
9.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각종 고령사회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정책 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하고,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구의회의원
3.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4.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5. 노인단체 관계자
6. 여성단체 관계자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원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관련단체나 관련업무 종사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7조(간사) ① 원활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소집 및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내용(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 등)
4. 회의결과

제10조(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 토 의 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약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